

아들·딸 과연 구별해 낳을 수 있나 '젠다초이스' 광고 소비자 현혹

소보원 "허위 선전" 고발...정확한 성능시험 시급

"아들을 손쉽게 낳는 세계 최초 특허", "아들을 원하십니까, 딸을 원하십니까", "미국 특허, 아들 딸 선택 임신"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다는 상품이 광고전단이나 중고물품 교환전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전되고 있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 상품은 판매가 시작된 지난 89년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약품인 양 광고해 약사법 제55조 2항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현재까지 계속 광고·판매되고 있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는 상품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는 아방약품의 '젠다 초이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보호원은 고발장에서 "이 상품은 단순한 1회용 체온측정기로 구성된 상품으로 임신 또는 피임을 위한 배란기 측정용임에도 마치 아들 딸을 선택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이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첨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도 허위광고임을 뒷받침한다. "광고상품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을 경우 정말 성을 선택해서 임신할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며 상품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

고 있다. 그 이유로 "정확한 배란 시기에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질내를 알칼리성화함으로써 남자의 임신율이 높아졌다는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가 나와 있지만, 질내 환경을 알칼리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히는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 상품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원하던 성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 고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1년 6월 아들을 구별해 낳을 수 있다는 말에 30만원을 주고 젠다 초이스를 구입해 사용했던 공아무개씨는 원하던 아들 대신 딸을 낳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해 최근 소비자보호원을 찾았다. 공씨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지만, 중간에서 중재해주지 않을 경우 환불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설명이다.

아방약품은 30만원 상당의 이 상품 외에도 남편이 컴퓨터를 만지거나 운전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남편의 몸도 보해줘야 한다면서 1백만원 상당의 생약 구입도 권장하고 있어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아방약품측은 "'젠다 초이스' 사용이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들 딸 가려 낳기' 붐을 타고 이 상품이 물밑에서 판매되는 현실에서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나오기 전에 이 상품의 성능이 과연 타당한지를 분명하게 따져보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사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떠넘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의 기능을 입증할 만한 산하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보사부로 떠넘기는 등 확실한 관할 관청이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하루빨리 관할관청을 분명히 해 정확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

젠다초이스
Gender Choice
sex of your next child-natu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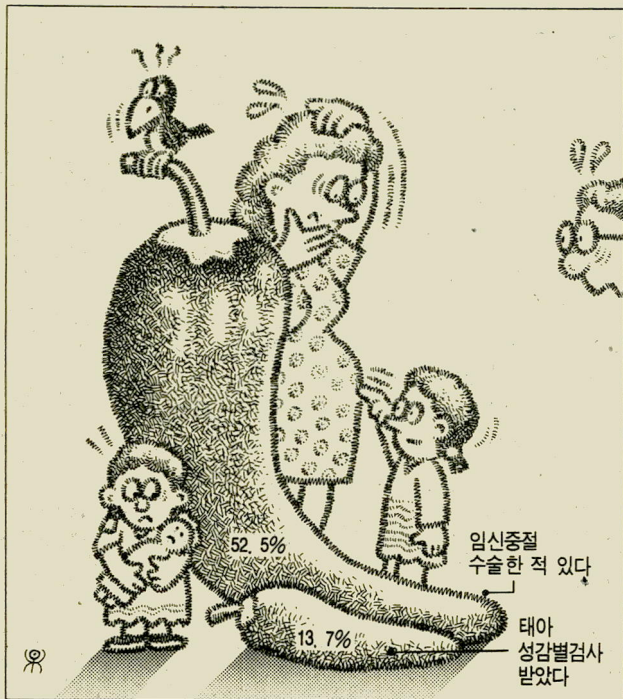
다 선택해서 낳을 젠다 초이스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젠다 초이스'의 전단들. 아직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성능테스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젠다초이스, 상담문의?
「젠다초이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사용상의 문의는 일련번호 「젠다초이스 토크라인」을 이용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구입 후 해당지역의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 바랍니다.

● 젠다초이스, 상담문의?
「젠다초이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사용상의 문의는 일련번호 「젠다초이스 토크라인」을 이용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서울대 보건대학원, 그림=김영훈 기자

“아들 낳기위해 중절수술” 53%

아들을 얻기 위해 임신중절수술이나 태아성감별검사를 받은 주부가 5명에 3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관리과 김정연씨가 최근 서울에 사는 주부 2백80명을 대상으로 ‘남아선호사상과 출산력’을 조사한 결과, 52.5%가 아들을 낳기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고 13.7%는 태아성감별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중 생리휴가 불인정’ 파문

법원 잇단 기각 판결에 여성계 “모성보호 역행” 반발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의 적법성을 묻는 국내 첫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려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는 7일 디자인포장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주미(33)씨가 낸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 및 산전산후 기간중 월차지급청구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산전산후 월차지급은 인정하고,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부분은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항소1부는 선고주문을 통해 “산전산후 기간중 월차지급은 인정한다. 회사가 임신기간중 지급됐던 생리휴가 수당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8만 6천5백2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한다. 나머지 원고의 소는 기각한다”고 선고함으로써,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신중 생리휴가 사

용의 적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소송대리인인 이원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너무 법리적 해석에 매달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말하고 기각된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회사쪽이 임신중 지급된 생리휴가수당을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소급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액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연이은 기각에 대해 여성계는 “그렇지 않아도 직장여성의 임신중 정기건강검진, 입덧휴가 등 모성보호 조항이 미흡한 현실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한 임신여성의 생리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노동부가 생리휴가 본래

취지를 살려 임신중인 여성에게도 이를 부여하는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에 관한 조항은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선 명문화돼 있지 않아 노사간에 생리휴가 인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져왔다.

노총 여성국 김령자 국장은 “생리휴가는 애초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임신한 여성의 생리휴가 사용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로기준법에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 인정을 단서조항으로 넣든지 모자보건법에 임신중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정기검진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신연숙 기자